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6.

발의자 : 이해식 · 강선우 · 이연희

김영진 · 한민수 · 박지원

윤준병 · 박상혁 · 홍기원

최혁진 · 최기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 · 국무총리 · 재정
경제부장관 · 교육부장관 ·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, 중앙지
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
함.

그런데 인공지능(AI)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
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
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
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3
조제1항 등).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065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교육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교육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교육부차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, 교육부차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교육부차관</u>, 행정안전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, 국무조정실 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, 법제처 차장</p> <p>2. ~ 4. (생략) ③ ~ ⑥ (생략)</p>	<p>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</u> <u>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</u> <u>지명하는 1명, 교육부차관---</u>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